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9-32 호

2019년 7월 9일 (화)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061)286-2073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4880호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81호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82호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83호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84호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85호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86호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87호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88호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89호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90호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91호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92호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93호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94호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95호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96호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97호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98호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899호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00호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훈 령

전라남도 훈령 제1417호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80호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남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홍보) 전라남도지사는 시·군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갑을 명칭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81호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구 과제 선정
3.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보급
4. 인력 양성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심의)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2.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협약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성과 관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농촌지도사업 및 정책에 반영하고 농촌진흥청장이나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지원
 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5. 농작물 병해충, 가축질병의 예찰·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 지도
 6. 첨단 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 지도
 7.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판매 지원
 8.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한다.
- ④ 제3항의 농촌지도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공로가 뚜렷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귀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첨단 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개발도상국 농업 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
3.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
4.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

기 위하여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2. 그 밖에 남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농업 협동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82호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국가기관 또는 전라남도 시·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경지·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2.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농을 목적으로 토양, 식물체 및 수질의 일반성분 시험 등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 유해성분 및 농산물 잔류농약의 시험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83호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를 말한다.
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
2. 인문학 진흥 관련 정책 제안
3. 인문학 교육 방향 및 인문정신문화 강좌 프로그램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
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인문학 강좌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교재 개발·보급
2. 인문학 학습프로그램 발굴
3. 인문 활동 동아리 운영

③ 도지사는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시·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큰 공헌을 한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84호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85호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안전공제·보험”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공제·보험 가입)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군수는 보험기관에 도민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요구) 도지사는 도민안전공제·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86호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 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각 시·군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4.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원대상지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공공기관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은 도의 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의 기본방향
2.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4.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사람) 문화·관광, 복지

나. (공간) 농산어촌, 지역개발, 환경

다. (산업) 지역산업

라. 시·군 간 상생협력

마. 투자재원의 조달

③ 전라남도 발전계획이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기본계획을 대신 할 수 있다.

제5조(시책반영) ①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상생협력 시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발전 계획

2. 전라남도 종합 계획

3.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4.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5.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 사업 계획

제6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지역 발전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 균형 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② 지역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형편을 고려하여 시·군 중에서 선정한다.

1. 지방재정 기반의 취약성 및 소득수준

2. 고령화의 심각성 정도

3. 주민 취업 기반의 미비성 정도

4. 사회기반시설의 낙후 정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 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 배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반시설 등을 확충함에 있어 도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한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간 균형발

전을 이루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광역단위 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결과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설치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의 보조금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시·군의 재정상황 및 지원대상지역의 발전 수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군의 재정상황 및 지역발전 수준 조사 결과와 제10조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둘 이상의 저발전지역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을 제시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3. 지역균형발전 사업비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지역균형발전 업무와 관계가 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나. 지역균형발전 전공 부교수 이상

다. 지역균형발전 연구기관 연구원장, 환경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

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87호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 소방 업무 소관별 실장·국장 각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 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3.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
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노동·민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주민대표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시민”을 “도민”으로,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화학사고 주민고지)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2. 구체적인 대피 요령
3. 개인보호 방법
4. 응급조치 등

제18조(화학물질감시단)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적절한 감시를 위하여 화학물질 감시단(이하 “감시단” 이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라남도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활동
2.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② 감시단원의 선발인원 · 임기 · 교육 · 구체적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감시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감시단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88호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하여 도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도 내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제 이스포츠 운영 방향 조사
2. 국제 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
3. 국제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
4. 국제 이스포츠 정책 개발
5.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 지원)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2. 이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89호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지역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책무)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선도적 주체로써 농수산물 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위한 시책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을 기초로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육성자문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육성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과 관련된 전문가와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 기술·경영 교육 및 상담
2.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3. 영농·영어(營漁) 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영농·영어(營漁) 작업환경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책의 실효성 제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 점검
2.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영농·영어 현황 및 평가
3. 관련 통계 조사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익적 가치 확산과 경제활동 촉진)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농어업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2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위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제한)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90호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것으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
2.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3.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 지원
4.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
5.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 확대
7. 지역화폐 이용대상 및 제한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할인 등 유통 활성화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역화폐 유통 기반 조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4. 지역화폐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장려금,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재정 지원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발행하려는 지역화폐의 총액
2. 보조 금액과 산출 근거
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 지원의 조건) ① 제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브랜드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화폐 운영의 평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시·군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화폐센터)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역화폐센터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2. 가맹점의 모집
3. 분쟁의 조정
4. 지역화폐의 이용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91호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 다.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등)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 계획에 맞게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92호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

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실태조사
2. 노동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보호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노동권익보호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2.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3.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도지사는 노동권익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퇴의사를 표명한 때
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때
3.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제9조(노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시 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소협의회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소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93호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관련자”란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통상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리·동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 권익옹호”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의 응급조치, 제59조의8의 보조인의 선임과 제59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담당업무를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행사항, 인식개선·정당한 편의제공 등 적극적 조치를 말한다.
4. “장애인 쉼터”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권리회복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보호·치료·권리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홍보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

기 위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① 장애인은 학대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차별 시정,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 유형 및 상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지원 정책

제5조(지원정책)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 및 교육·홍보
2.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이행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정당한 편의제공 등
3. 피해장애인 지원, 지역사회 정착지원 등 피해장애인 권리회복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기관, 시장·군수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사업별 핵심과제와 추진체계, 단계별 추진과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자원 조달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개선 추이와 전망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누리집을 통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제18조의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와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해당 연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전라남도 의회에 보고하고, 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익옹호의 세부 계획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

2. 장애인 차별금지 지원 방안 및 편의제공 등의 세부 계획
3.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세부 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도민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참여 활성화 방안 등
-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3월까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시행계획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위해 매년 8월까지 핵심사업 담당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1. 인권 및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정책 지원
3. 장애인학대 개념과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행동수칙, 장애인학대 대응과정
4. 공공기관 법 이행사항 및 지원, 편의제공 등 조치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홍보)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별도의 알림 창을 도 누리집에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 및 차별사례, 공공기관 등의 법 이행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도 및 시·군 자치법규의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정착지원금)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법률지원)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이 촉탁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관 운영

제14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에 따른다.

제15조(장애인인권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차별 상담 및 대응 활동
2. 공공기관 법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활동
3.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4. 관계 법규 교육 및 홍보, 웹사이트 운영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업무

제16조(장애인쉼터 운영) ①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전라남도장애인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의 시설로 각각 설치·운영한다.

②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에 따른다.

③ 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장애인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옹호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장애등으로 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성별·장애 등을 고려하여 쉼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쉼터 이용을 승인하고, 피해장애인이 조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쉼터의 이용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장은 피해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원하는 경우,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등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 도지사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위원회

제18조(설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교육 및 홍보 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 지원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단체의 대표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
3. 변호사 등 법조인
4. 학계 전문가
5.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2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 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94호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돌봄”이란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2. “문화재돌보미”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 사람 중에서 공모로 선발되어 문화재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재돌봄사업) 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돌보미의 선발·관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3.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4. 문화재 관람 환경 개선
5.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 조사 및 재난 시 응급조치

제5조(문화재돌보미의 선발 등) ① 도지사는 문화재돌보미를 선발할 때에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재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문화재돌보미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문화재돌보미의 자격 요건,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재돌보미의 업무) 문화재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 등
2. 문화재 관람 환경 유지·관리

3. 문화재 현상유지 및 보존관리를 위한 경미한 문화재 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돌보미의 업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직무교육) 도지사는 문화재돌보미가 문화재돌봄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재돌봄 보존 및 관리

2. 업무 역량 강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95호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회계감사)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96호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3. 생활 및 자연환경,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배려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5. 국가 및 국내외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6. 자원순환과 자원, 에너지절약의 원칙

② 시·군은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제1항의 환경보전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규제조치) 도지사는 사업자 및 도민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양만권 대기환경기준(제12조 관련)

항 목	기준	측 정 방 법
이황산가스 (SO ₂)	연간 평균치 0.015 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 이하	자외선형광측정법 (Pulsed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7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0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 ₂)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8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40 μ g/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80 μ g/m ³ 이하	베타선흡수법 (β -Ray Absorption Method)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μ g/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μ g/m ³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오 존 (O ₃)	8시간 평균치 0.048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08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 평균치 0.3 μ g/m ³ 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 평균치 3 μ g/m ³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비고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97호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의 전라남도 행정 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도민참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누구든지 평등하게 전라남도 행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도민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도정은 도와 도민이 협력하는 도민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참여”란 도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민과 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도지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도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8조(갈등조정을 위한 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갈등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도민, 학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 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안 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고, 현안 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토론 등의 청구) ① 도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18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설명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의 정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98호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개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역사회개발·발전”을 “지역사회 개발·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권익증진”을 “권익 증진”으로, “육성보호”를 “육성·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을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범죄예방”을 “범죄 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를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를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체육진흥”을 “체육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해외봉사활동”을 “국외봉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공공행정분야”를 “공공행정 분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라남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도지사는”으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기능은”을 “위원회는”으로, “호와 같다”를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협력 조정”을 “협력·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중 “구성 및 운영”을 “구성·운영 및”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자원봉사센터”를 “전라남도 자원봉사 센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비영리 법인 등 에게 운영하게 하거나”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조직 및 운영 등)”을 “(센터의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센터장”을 “그 밖에 센터장”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공개모집”을 “공개경쟁”으로, “응모한 사람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가”로, “공개모집”을 “공개경쟁”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등이 선임한다”를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른 시·도 지역”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센터간의”를 “센터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도 차원의 지역사회”를 “도의”로, “기여”를 “이바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자원봉사 실적 인정)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와 전라남도 내 시·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10조) 중 “법인 등”을 “법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전단 중 “센터는 제10조”를 “센터장은 제9조에”로, “매 회계연도의”를 “회계연도마다”로, “회계연도 개시 1월”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를 “센터장은 회계연도마다”로,

“회계 년도 2월말”을 “회계연도 2월 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는”을 “센터장은”으로, “2주”를 “2주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자원봉사진흥”을 삽입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자원봉사진흥”을 삭제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을 “전라남도민의 자원봉사활동”으로, “1주간”을 “1주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공단체에 대한”을 “유공단체”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보험가입)”을 “(보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 일부”를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의 제목 “(실비지급)”을 “(실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센터는”을 “센터장은”으로 한다.

제4장 앞에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899호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시기적절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등의 확대와 응급처치 및 이송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환자 골든타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계획(이하 “골든타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골든타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목표와 추진전략
2.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을 위한 사업별 핵심과제와 추진체계 구축
3.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4. 응급의료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확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확대 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응급환자의 대응에 있어서 사각지대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외상센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적절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확대와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통화 응급처치 구축)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119종합상황실 내에 영상통화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통화 응급처치에 관한 정보를 도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 응급상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급 출동로 표지선 지원) ① 도지사는 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 추진 방법, 절차, 지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00호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국외활동”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활동”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외출장”을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출장하는”을 “국외출장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국외활동”을 각각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공무국외활동”을 각각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공무국외활동의 허가)”를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국외활동은”을 “공무국외출장은”으로,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등)”을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의

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3명.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6명
-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제5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위원이”를 “민간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심사한다”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외출장 목적과 방문국가와 방문기관의 적절성

제6조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국외활동”을 “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국외활동기간”을 “국외출장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국외활동”을 “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4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제7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국외활동”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과반수의 찬성”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를 “심사위원회의”로 하며,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를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 등)”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무국외활동을”을 “공무국외출장을”로, “21일”을 “45일”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7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연수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1회 2시간 이상의 사전학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출장계획서에 사전학습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출장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 후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국외활동” 을 각각 “공무국외출장” 으로, “제출” 을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무국외활동” 을 각각 “공무국외출장”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보관·비치하고,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공무국외활동” 을 “공무국외출장” 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에 이미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 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국외출장 개요

국외출장 목적						
국외출장 동기 및 배경						
국외출장 기간	... ~ ... (일간)					
국외출장 국가						
국외출장 참가자	소 속 위원회	성명	성별	연령	국외출장경비 (단위:천원)	
					금액	부담 기관
	계					

2. 국외출장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업무내용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국외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국외출장 효과

※ 붙임 :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서약서

(붙임)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서약서

1. 전라남도의회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결과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공무출장계획에 따른 출장목적과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출장 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6. 출장 중의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7. 공무국외출장 중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의장에게 신고한다.
8.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의원] ○○○ 인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사>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 7.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훈령 제1417호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 을 “이바지함” 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를 “도” 로, “법령의” 를 “법령에” 로, “규정이 정하는” 을 “규정에서 정하는” 으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를 “규정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용되는” 을 “임용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도의 국장” ” 을 “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국장급”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의회사무처 총무·의사·정책담당관” 을 “전라남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 라 한다)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정책담당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은 4급” 을 “4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직 등” 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령” 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의 전산·사회복지직렬과 기술직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각 호의 기술직군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등에 대한” 을 “등 공무원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른” 을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실·국·원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등 공무원에 대한 인사 의견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부서의 실·국·원장과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7조의2,” 를 “제67조의2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인사기준 공개)” 를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인사기준 공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 을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으로, “인사위원회” 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 로, “시행하되” 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사전에”를 “미리”로, “동시에”를 “동시에 인사기준을”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의 연도별 5급”을 “5급”으로,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를 “여성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연도별 임용목표”로, “미달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순위 2배수 범위 내의”를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입일로부터 2년 범위에서”를 “전입일부터 2년 범위에서,”로, “전입일로부터 6개월의”를 “전입일부터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 승진제한기간이 종료된”을 “공무원은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난”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 5급이하”를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공무원의 승진”을 “지방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4급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배수를 적용”을 “승진임용 범위를 정하며, 시·군 전출 시에는 전출하는 시·군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대리자를”을 “직무대리를”로, “명부의 과장급 직무대리자를”을 “명부에서 과장급 직무대리 공무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급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차상위 계급으로 승진임용 할”을 “차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할”로, “승진임용하며, 승진임용 인원의 30퍼센트는 승진임용 배수 내에서 업무추진 우수자를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를 “승진임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진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는 영 별표 4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서 업무추진 우수자를 우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을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에 따른”으로, “(연구·지도직, 관리운영직군 제외한다)은 승진 임용”을 “(연구직·지도직과 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한다)은 승진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의2제3항의”를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를 “아니한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역량교육 및 평가실시)”를 “(역량교육 및 평가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를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을 “교육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5급 이상 승진을 위한 후보자 사전교육)”을 “(5급 이상 승진후보자 사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교육훈련과정”을 “기본교육훈련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승진 예정 인원내 대한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인사교류는 일대일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를 “따른 인사교류는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교류자에게 별표 10에서 규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을 “계획인사 교류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및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최초임용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에 총 1회 이상 일정 기간 동안 파견근무를 하여야 한다.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중앙부처
2. 그 밖의 임용: 중앙부처, 관계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 경우 파견발령은 승진임용 순서에 따른다.

제12조의2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승진임용 시 만 55세 이상인 공무원
2. 파견 수요가 없는 직렬의 공무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으로 해당 직급에서 2년(직무대리기간 포함)이상 근무한” 을 “도의 3급”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부단체장: 4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서 2년(직무대리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진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 다만, 대상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경력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단체장은 동일 시·군에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보임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까지 보임할 수 있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에서” 를 “파견지역 구분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도” 를 “소속 공무원을 도의 관할구역” 으로, “설치된” 을 “설치한” 으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며, 같은 항 중 “제 3 장 보직관리기준” 을 “제 3 장 보직관리 기준” 으로 한다.

제13조 중 “보직함에 있어서” 를 “보직할 때에는” 으로, “부여하여야” 를 “주어야” 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행정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전보시킬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임용할 수 있는 직위와 그 밖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을 “별표 1에 따른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으로, “근속”을 “계속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서의 공무원 은”을 “부서에서는”으로, “근속할 수 없으며,”를 “계속 근무할 수 없으며, 전보 후”로, “재전보될”을 “재전보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한”을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난”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하며,”로, “의회사무처 전보를”을 “의회사무처로의 전보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 같다”를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시장:”을 “부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시장·부군수:”를 “부단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그밖에 유사한 직”을 “그 밖에 유사한 직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부군수 중에서도”를 “부단체장 중에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도의회사무처”를 “의회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팀장별”을 “팀별”로, “직위를 부여)하고 직무를 부여한다”를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준다)하고 직무를 준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회사무처장”을 “의회사무처장”으로, “실별로 배치하되,”를 “의회사무처의 실별로 배치하고”로, “부여한다”를 “준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를 “소속기관의 과”로, “(5·6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하되, 과장 및”을 “(5급 또는 6급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준다)하고 과장 등”으로, “부여한다”를 “준다”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15조의2제1항”으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배치하는 경우”를 “공무원의 근무부서를 배치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국장의 의견을 근무부서 배치 시”를 “실·국장의 의견을”로 한다.

제16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7급”을 “도 본청 소속 7급”으로, “도 본청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사업소로”를 “사업소로 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위”를 “직위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고시 등”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자”를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직, 청렴결백”을 “정직·청렴결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당해분야”를 “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해당 분야”로 한다.

제19조를 제9조의2로 한다.

제9조의2(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의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한다”를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무원에게 실적가점을 준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여대상”을 “부여 대상”으로, “별표 7과”를 “별표 2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8 및 별표 9의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기준일”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 기준일”로, “실적가점 심사위원회”를 “전라남도 실적가점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 과반수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이상”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반영하는 실적가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법을 따른다.

제20조 단서 중 “임용 적격자가”를 “임용자격에 적합한 사람이”로, “있을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신체장애자의 보직)”을 “(신체장애인의 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은”으로, “보직토록 하여야”를 “보직하여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방5급 공무원)”을 “(지방5급 공무원) (지방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팀장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고시”를 “팀장급이 결원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군 5급”을 “시·군 소속 5급”으로, “임용하려는”을 “임용하고자 할”로, “협의를 따라 일대일교류인사”를 “협의를 하여 일대일 인사교류”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지방6급 공무원)”을 “(지방 6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에 결원이 있는”을 “공무원이 결원인”으로, “승진임용”을 “승진임용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 6급”을 “시·군 소속 6급”으로, “협의를 따라 1:1 교류인사로 하되 업무능력,”을 “협의를 하여 일대일 인사교류로 하되 업무능력과”로, “고려하여 임용”을 “고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지방7급 이하 공무원)”을 “(지방7급 이하 공무원) (지방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하에 결원이 발생한”을 “이하 공무원이 결원인”으로, “승진임용”을 “승진임용함”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다음 순위에 따른다”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순서로 임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간 1:1”을 “일대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우는”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내 시·군의”를 “시·군 소속”으로, “도로”를 “도에”로, “전라남도 전입시험을 통해 전입대상자를”을 “전입시험을 통해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한 사정”을 “사정”으로, “근무경력에 관한”을 “근무경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공개채용시험 출신자는”을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으로, “전출제”를 “전출 제”로, “때”를 “경우”로, “종료된”을 “끝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청”을 “본청(사업소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령이 규정한 승진제”를 “법령에서 정한 승진 제”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금횡령·유용”을 “공금 횡령·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를 “합하여 높은 점수 순서”로, “불합격자로 한다”를 “불합격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를 “합격자 결정의 유효기간은 결정일부터 1년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출신”을 “전입”으로, “비율이 낮은”을 “특정”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 5 장 보 칙”을 “제 5 장 보칙”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미만인 경우 또는”을 “미만이거나”로, “이내인 경우에는 전출될”을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출입에 대”를 “전출·전입에 관”으로, “연간”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26조 중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승진, 전보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를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의”로, “별도의 기준을”을 “따로”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가점 부여 대상 및 배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4급·5급 승진임용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 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직렬별 인사 의견 제출 실·국·원장(제4조제2항 관련)

직렬(직류)	실·국·원장	비고
전산통신직	· 기획조정실장 (스마트정보담당관)	
기계·화학·자원·전기·직	· 경제에너지국장 (신성장산업과장)	
보건·사회복지직	· 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농업직 축산·축산연구직 수의·작·수의연구직	· 농축산식품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수산·해양·수산업·연구직, 어촌·지도직	· 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기술원장	
환경직 녹지·녹지연구직	· 동부지역본부장(기후생태·산림보전과장)	
토목·건축·지적직	· 건설교통국장 (건설도시건축개발토지관리과장)	
농촌·지도·농업·연구직	·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기술지원국장)	
보건·연구·환경·연구직	· 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부장)	

[별표 2]

실적가점 부여 대상 및 배점(제9조의2제2항 관련)

분 야 별	부 여 대 상	배점	가 점 요 건
1. 중앙단위 기관표창 수상	- 인 원: 1~2명 이내 - 대통령(1위) - 국무총리(2위) - 장관(3위)	1.0점 0.7점 0.5점	- 해당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유공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상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팀장급, 담당자(전·현임)에게 가점 분할
2. 업무관련 칭안	- 정부제안제도 채택 - 금상 - 은상·동상 - 장려노력상 ※ 도 제안제도 채택 시 정부제안제도 배점의 1/2부여	0.8점 0.6점 0.4점	- 해당 직급 수상에 한함 - 공동제안의 경우 2명까지 가점 부여 - 부제안자(1명)는 주 제안자의 1/2점 부여 - 채택제안 실시자(1명)는 0.1점 부여
3. 청백 봉사상 등 수상	-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상, 지방행정의 달인 - 청렴대상 - 1위 - 23위 - 45위	1.0점 1.0점 0.8 0.6 0.4	해당직급 수상에 한함
4. 규제개혁 포상 수상	- 중앙단위 평가 유공자 포상 - 최우수상(1위) - 우수상(2위) - 장려상(3위) * 도 자체평가 포상자는 배점의 1/2부여	0.5점 0.3점 0.2점	규제개혁 중앙단위 평가에서 개인 포상 수상자에 한함
5. 근무실적 우수자	- 인 원: 현원의 5퍼센트 이내 - 실적평가결과(선발비율) - S등급(20퍼센트) - A등급(40퍼센트) - B등급(30퍼센트) - C등급(10퍼센트)	2.0 1.5 1.0 0.5	- 해당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 중 실·국·원장 추천자 -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정발전에 탁월하게 이바지한 자 - 도정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자 - 격무·고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 ※ 다만, 사전에 실적가산점평가위원회 개최심의 결과 반영
6. 세수증대, 예산절감	- 세수확보 및 예산절감액(연간)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0.5점 0.3점 0.2점	- 인원: 2명 이내 - 세원확보 및 예산절감으로 포상금을 받았거나, 중앙부처 감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7. 중앙부처 파견·교류	- 대상: 중앙부처(위원회, 법인 등 포함)에 파견·교류된 공무원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0.3점 0.5점 1.0점	‘08. 1. 1. 이후 중앙부처에 파견·교류된 공무원 ※ 계획인사교류 가산점은 “별표 3”에 따름
8. 다자녀 출산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시 부여 - 첫째(여성공무원) - 둘째(여성공무원) - 셋째(남녀공무원 각각) - 넷째(남녀공무원 각각)	1.0점 1.5점 2.0점 3.0점	‘18. 12.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 ‘18. 12. 1. 이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은 개정 전 가점기준 적용

분 야 별	부 여 대 상	배점	가 점 요 건
9.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책	- 대상: “가” 등급 평가지표 ‘가’ 등급 분야의 ‘가’ 등급 ‘나’ , ‘다’ 등급 분야의 ‘가’ 등급 ※ 복수의 지표담당의 경우 가점상한은 1.0점이며, 부분 평가지표는 가점대상 제외	0.5점 0.3점	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시책별 평가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또는 실무자 1명
10.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Ⅱ 등급 이상) - 청렴도 평가결과 매년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0.5점	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평가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또는 실무자 2명 이내

※ 실적가점 사유 발생후 최초 정기평정일까지 신청(가점은 사유 발생시부터 가점부여 기간 산정)

[별표 3]

계획인사교류 우대사항(제12조의2제2항 관련)

인사상 인센티브	보수상 인센티브
◆ 4→3급(준국장, 부단체장 포함) - 계획교류(전출전입) 경력자 우선 승진, 부단체장 및 국외훈련 우선 선발 ◆ 6→5→4급: 승진예정인원 2배수 이내자 중 계획교류(전출전입) 경력자 및 희망자 우선 승진 ◆ 근속승진기간에 교류기간의 2분의 1 반영 ◆ 1년 이상 계획교류자 교류가산점 부여 (중앙부처, 타 시도 교류) - 월 0.05점, 최대 1.2점 ◆ 1년 이상 계획교류자 교류가산점 부여 (사군 교류) - 월 0.01점, 최대 0.24점 ◆ 근무성적 평정 : 최하 “우”등급 ◆ 성과급 우대 - 최하 “A”등급 및 교류직전 등급보다 1단계 높은 등급 부여 ◆ 2년 이상 계획교류자 특별승급 ◆ 계획교류자 복귀 시 희망보직 우선 부여 ◆ 국외연수, 교육훈련 등 우선 선발 ◆ 중앙부처, 타 시도 → 도 교류자 - 소속기관 방문(정보동향파악): 주 1회 - 4급 이상: 업무추진비 확대 등	◆ 주택보조비: 월 100만원 이내 - 중앙부처, 타 시도 교류 시 지급 ◆ 교류수당: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금액 지급 ◆ 주거지원비(사군 교류): 20만원

[별표 4]

도 전입시험의 출제유형, 과목 및 배점표(제24조4항 관련)

출제유형	과 목	배 점	비 고
주 관 식	해당 직렬의 행정실무	40퍼센트	
객 관 식	일반상식(경제분야 5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면 접	면 접	10퍼센트	

[별지 제2호서식]

개인별 실적가점 신청서

대상자	소 속	직급	성 명	현직급 임용일	현부서 임용일	담당업무	신청 점수
실 적 분 야							우선순위
○ 실적개요(50자 이내로 요약) - -							
○ 실적내용(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재) - - -							
○참고자료(증빙자료 목록을 기록하고 자료 첨부) - -							

년 월 일

평정자: 직 위 성 명 (인)

확인자: 직 위 성 명 (인)

전라남도실적가점심사위원장 귀하